

[붙임]

21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※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,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최우선선정 실시

1 개별점수 산정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고
■ 공통적용 항목	60점	
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5점	
②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)	15점	
③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)	10점	단, 재해율 순위 10개 전 소업종 단위로 1점씩 차감
④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	5점	
⑤ 취약계층* 근로자 고용 사업장(근로자 1명당 2점) * 장년근로자(만55세이상), 장애인, 외국인, 청년(15~29세이하)	10점	
⑥ 크레인(정격하중 2톤이상), 지게차(좌 입식) • 해당설비 사진제출(크레인 정격하중 확인가능 사진) 시 인정	5점	
■ 자율활동 우수항목	50점	
⑦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①노사문화우수기업, ②강소기업,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, ④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, ⑤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⑦일터혁신 우수기업(인증)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	40점	각 5점씩
⑧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	5점	'20~'21년 참여업체
⑨ KOSHA-MS 인증기업	5점	
■ 가점항목(사망사고 감소사업, 고용·산업위기지역)	+30점	
⑩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	+10점	신규
⑪ 고용위기 지역 • '20년~'21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	+10점	(해당없음)
⑫「산단대개조」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	+10점	신규 (해당없음)
계		

2 개별점수에 품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최종점수로 우선순위 선정

품목	필수노동자·3밀	시저형리프트 방호장치	채광창덮개·안전대 부착설비	기타 고위험설비
가중치	1.2	1.2	1.1	1.0

예시) A사 : 3밀품목 개별점수 63점×1.2 = 75(소수점 절사)

B사 : 지게차 방호장치 72점×1.0 = 72

☞ 최종순위 : A사가 B사 보다 선순위

※ (1차)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품목별 가중치→가점항목(⑩→⑫)→공통항목(①→

⑥)→우수항목(⑦→⑨)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
※ (2차) 1차 적용 이후 동점 사업장이 발생할 경우, 신청수량이 많은 사업장부터 선정

※ (3차) 2차 적용 이후 동점 사업장이 발생할 경우,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부터 선정

참 고

⑪ 고용위기 지역 : 울산광역시 동구, 전라북도 군산시,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, 경상남도 거제시, 경상남도 통영시, 경상남도 고성군, 전라남도 목포시, 전라남도 영암군

⑫ 「산단대개조」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

- 경북지역 : 구미산단, 성주산단, 왜관산단, 김천산단

- 광주지역 : 광주산단, 하남산단, 빛그린산단

- 대구지역 : 성서산단, 서대구산단, 대구제3산단, 북구혁신경제벨트

- 인천지역 : 남동산단, 주안산단, 부평산단, 송도산단

- 전남지역 : 여수산단, 광양산단, 울촌제1산단, 광양향산단